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73
----------	-------

발의연월일 : 2026. 5. 27 .

발 의 자 : 김예지 · 김상훈 · 윤후덕
김선교 · 김형동 · 조정태
김 건 · 김소희 · 유용원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따른 선거공보”를 “따른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로,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는”으로, “내용”을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 중 “제65조제4항 단서를”을 “제65조제4항을”로, “점자형”을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점자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65조제11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p> <p>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⑤ ~ ⑩ (생략)</p> <p>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p>	<p>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따른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 · 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 ·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u> ----- -----<u>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⑪ <u>후보자는</u>----- -----</p>

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⑫ ~ ⑭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출하여야 하며,-----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제65조제4항을-----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점자형-----

3의2. 제65조제11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p><u>3의2.</u> · <u>3의3.</u> (생략)</p> <p>4. · 5. (생략)</p> <p>④ ~ ⑫ (생략)</p>	<p><u>사람</u></p> <p><u>3의3.</u> · <u>3의4.</u>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p> <p>4.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⑫ (현행과 같음)</p>
---	--